

【 7 】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7. 6.

제 출 자 : 양주군수

□ 제정이유

-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주군과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 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급물가모니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시책 등을 추진토록 함.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소비자 단체를 육성 지원토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마. 사업자는 위해물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위해물품 발생시 즉시 이를 공표 및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6조)
- 바. 사업자는 상품에 유효기간, 유해성분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제21조)
- 사. 소비자 보호 및 군민 소비생활 안전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2조)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주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정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검사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 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 및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을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등) ①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소비자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5. 설립년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5.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 군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③제2항의 유급상담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양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시험·검사의뢰 및 시설설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설정·고시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2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소비자피해구제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소비자피해 조정) ①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소비자소송의 지원) ①군수는 소비자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9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

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군수는 제23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권고 및 공표) ①군수는 사업자에게 제23조, 제29조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29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법제17조의5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 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1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 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

제7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2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군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학계·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근로자단체·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군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군 관여요금증 상·하수도 요금의 조정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률이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제정

□ 제 정 이 유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주군과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 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급물가모니터를 두고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추진토록 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상담실 및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토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마. 사업자는 위해물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해물품 발생시 즉시 이를 공표 및 회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
- 바. 사업자는 상품에 유효기간, 유해성분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을 할 수 없음(안 제17조, 제21조)
- 사. 소비자보호 및 군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2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소비자보호법 제5조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6,150천원

□ 사전예고결과 : 1999. 7. 12 ~ 8. 1(20일간) 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없 음

● 消費者保護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全文改正 1986. 12. 31 法律第3921號
 改正 1995. 12. 6 法律第4980號(基金管理基本法)
 1995. 12. 29 法律第5030號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
 備에관한法律)
 1999. 2. 5 法律第5748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을 規定함과 아울러 消費者保護施策의 綜合的 추진을 위한 基本的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2.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消費者團體"라 함은 消費者의 權益을 擁護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第3條 (消費者의 基本的權利)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享有한다.

1.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 인한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로부터 보호받을 權利
2.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서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
3. 物品 및 用役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相對方·購入場所·價格·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權利
4. 消費生活에 영향을 주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事業活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權利
5.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節次에 의하여 적절한 補償을 받을 權利

- 6. 합리적인 消費生活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教育을 받을 權利
- 7. 消費者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活動할 수 있는 權利

第4條 (消費者的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 民主的이고 성실한 行동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第2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等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改正 95·12·29>

-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
-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운영 개선
- 3. 필요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 4. 消費者의 건전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지원·육성

第6條 (危害의 방지) ①國家는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 인한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가 지켜야 할 基準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1. 物品 및 用役의 成分·含量·構造등 그 중요한 내용
- 2.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警告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 3. 기타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을 定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기준을 事業者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定期的으로 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財政經濟部長官은 각종 危害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消費者團體, 病院, 學校등을 危害情報 報告機關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7條 (計量 및 規格의 적정화)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事業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計量으로 인하여 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計量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의 品質改善 및 消費生活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規格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8條 (표시의 基準) ①國家는 消費者가 物品의 사용이나 用役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選擇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主管하는 物品 또는 用役に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商品名·用途·成分·材質·性能·規格·價格·容量·許可番號 및 用役의 내용
2. 物品을 製造·輸入·加工하거나 用役을 제공한 事業者名(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物品의 原產地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警告事項
4. 製造年月日, 品質保證期間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등 流通過程에서 變質되기 쉬운 物品은 그 有效期間
5. 표시의 크기·位置·方法
6. 物品 또는 用役に 대한 不滿 및 消費者被害가 있는 경우의 處理機構(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9條 (廣告의 基準制定) ①國家는 物品 또는 用役의 잘못된 消費 또는 과다한 消費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產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廣告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95·12·29>

1. 用途·成分·性能·規格·原產地등의 廣告에 있어서 許可 또는 공인된 내용 단으로 廣告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廣告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消費者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및 特定表現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廣告의 媒體 및 時間帶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

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0條 (거래의 적정화) ①國家는 事業者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消費者가 부당한 被害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의 합리적인 選擇을 방해하고 消費者에게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事業者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표시할 수 있다.

③國家는 約款에 의한 거래·訪問販賣·割賦販賣 등 특수한 形態의 거래에 대하여는 法律의 制定 등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削除 <95·12·29>

第11條 (消費者에의 情報提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基本的인 權利가 實現될 수 있도록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을 消費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物品 및 用役을 合理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未來條件이나 未來方法과 관련된 事業者의 情報가 消費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第12條 (消費者被害의 救濟)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기준이 된다. <新設 95·12·29>

第13條 (試驗·檢査施設의 設置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 등에 관하여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는 機構와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消費者나 消費者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消費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檢査機關이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여 試驗 등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公表하고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團體가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안전성 등에 관하여 試驗·檢査를 실시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14條 削除 <95·12·29>

第3章 事業者의 義務

第15條 (消費者保護에의 協力) ①事業者는 物品 또는 用役을 供給함에 있어서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去來條件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29>

②事業者는 그 供給하는 物品 또는 用役に 대하여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施策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消費者團體 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5>

第16條 (危害의 방지등) ①事業者는 第6條第1項의 基準에 準달되는 物品을 製造·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事業者는 第8條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事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基準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事業者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削除 <99·2·5>

第17條의2 (是正措置의 요청) 財政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을 주관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에 필요한 적절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5·12·29]

第17條의3 (收去·破棄命令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物品 및 用役의 供給과 관련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안전에 현저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收去·파기를 명하거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供給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物品 및 用役과 관련된 施設의 改修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9章 物價·公正去來·外資 消費者保護法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破棄命令에 다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收去하여 과기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17條의4 削除 <99·2·5>

第17條의5 (法違反事實의 公表)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章 消費者團體

第18條 (消費者團體의 業務等) ①消費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9·2·5>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消費者保護施策에 관한 建議
2.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성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
3. 消費者問題에 관한 調査·研究
4. 消費者의 教育

5. 消費者被害 및 不滿處理를 위한 相談·情報提供 및 當事者間 合意의 권고

②消費者團體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分析등의 結果를 公表할 수 있다. 다만, 公表되는 사항중 物品의 品質·性能 및 成分등에 관한 試驗·檢査로서 전문적인 設備을 필요로 하는 試驗·檢査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檢査機關의 試驗·檢査를 거친 후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消費者團體는 第1項第5號의 消費者不滿 및 被害를 처리함에 있어서 消費者와 事業者間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相對方 消費者를 代理하여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消費者團體는 第52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拒否등의 事實과 사유를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 <新設 99·2·5>

⑤消費者團體는 業務상 알게된 정보를 消費者保護目的의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新設 95·12·29>

⑥消費者團體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제공받은 資料 및 情報을 消費者保護目的의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新設 99·2·5>

第19條 (消費者團體의 登錄) ①第1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錄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그 活動을 하기에 적합한 設備과 人力を 갖추어야 한다.

第20條 (補助金の 支給)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登錄된 消費者團體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5章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第21條 (審議委員會의 設置) 消費者保護 및 國民消費生活의 향상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2·29, 99·2·5>

第22條 (審議委員會의 구성) ①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과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 및 經濟團體에서 추천하는 消費者代表 및 經濟界代表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第2項의 委員중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의외에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審議委員會의 機能) ①다음 各號의 사항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2·29>

1. 第5條 各號의 사항

2. 第6條第1項·第8條第1項·第9條第1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의 制定·변경

- 3.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 4. 消費者關聯 紛爭調停機構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消費者保護 및 消費生活에 관한 基本政策으로서 委員들이 附議하는 사항

②審議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實務委員會 또는 專門委員會를 들 수 있다. <新設 95·12·29>

第24條 (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第23條第1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消費者 또는 關係事業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5·12·29>

第25條 (運籌細則) 이 法에 規定한 것의에 審議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6章 韓國消費者保護院

第1節 設立等

第26條 (設立) ①消費者保護政策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한다.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韓國消費者保護院은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④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7條 (定款)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目的
- 2. 名稱
-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 4. 削除 <95·12·6>
-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6.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紛爭調停委員會에 관한 사항
- 8. 業務에 관한 사항
- 9.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10. 公訴에 관한 사항
-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12.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發에 관한 사항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第28條 (業務) 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29, 99·2·5>

- 1. 消費者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 2.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의 실시
- 3.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制度와 정책의 研究 및 建議
- 4. 消費生活의 合理化 및 안전을 위한 각종 情報의 蒐集과 제공
- 5.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教育 및 刊報
- 6. 國民生活의 향상을 위한 綜合的인 調査·研究
- 7. 기타 消費者保護關聯業務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99·2·5>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物品 또는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救濟
-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害救濟

③ 韓國消費者保護院은 消費者權益의 보호 및 增進을 위하여 그 業務의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公衆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9·2·5>

第29條 (試驗·檢査의 의뢰) ① 院長이 第2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立 또는 公立試驗檢査機關에 關係物品에 대한 試驗·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의 의뢰를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0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아닌 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任員 및 理事會

第31條 (任員 및 任期)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院長과 副院長 各 1人을 포함한 10人 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95·12·29>

②理事 3人은 常任으로 하고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院長은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副院長 및 理事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⑤監事는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⑥院長·副院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32條 (任員의 職務) ①院長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代表하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總指한다.

②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며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院長·副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95·12·29>

④監事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33條 (理事會)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院長·副院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改正 95·12·29>

③院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3節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

第34條 (設置)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調停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消費者紛爭에 대한 調停決定
2. 消費者紛爭調停規則의 制定 및 改廢
3. 기타 院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調停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로 1人을 포함한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은 常任으로,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출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5·12·29, 99·2·5>

1.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關聯분야를 專攻한 者

2. 4級이상의 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共機關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4. 消費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5. 專業者 또는 專業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④委員長은 常任委員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⑤委員長이 事故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指定하는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99·2·5>

⑥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⑦調停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⑧第6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資格停止이상의 刑罰을 받거나 心身上의 障礙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7條 (議決定足數) 調停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5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5·12·29>

第38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救濟請求事件(이하 이 條에서 "事件"이라 한다)의 審議·議決에서 제외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關係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院長에게 回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院長은 回避申請에 대하여 調停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 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第4節 被害救濟

第39條 (被害救濟의 請求) ① 消費者는 物品의 사용 및 用役의 이용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를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消費者團體 또는 事業者가 消費者로부터 被害救濟請求를 받은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院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事件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第40條 削除 <95.12.29>

第41條 (違法事實의 통보등) 院長은 被害救濟請求事件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法令違反事實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措置를 의뢰하여야 한다.

第42條 (合意勸告) 院長은 被害救濟請求의 當事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에 대한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43條 (調停) ① 院長은 第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요청하고 그 決定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 消費者와 事業者間에 발생한 紛爭에 대하여 第18條第1項第5號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關係當事者는 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紛爭調停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③ 削除 <95.12.29>

第43條의2 (紛爭調停) ① 調停委員會는 第18條第3項과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9章 物價·公正交易·外資 消費者保護法

紛爭調停을 신청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紛爭調停節次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專門委員會의 諮問을 구할 수 있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에 앞서 이해관계인, 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4條 (紛爭調停의 期限) ①調停委員會는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紛爭調停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紛爭調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期限을 명시하여 當事者 및 代理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45條 (紛爭調停의 効果) ①調停委員會委員長은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한 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當事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紛爭調停에 대한 受諾拒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紛爭調停을 受諾한 것으로 본다. <新設 95·12·29>

④第2項 및 第3項의 紛爭調停의 내용은 裁判上の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 <改正 95·12·29>

第46條 (被害救濟節次의 증지)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處理의 증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 증지하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5節 會計·監督等

第47條 (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당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

에 出捐할 수 있다.

第48條 削除 <95·12·6>

第49條 (監督)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 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49條의2 (權限의 위임·委託)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資料提出要求權限을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所屬職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查를 의뢰하는 경우
2.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 또는 의뢰된 被害救濟事件을 처리함에 있어서 事實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第5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委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추 105)

第7章 調査等の節次

第52條 (檢査와 資料提出등) ①中央行政機關의 統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物品·施設 및 物品製造工程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당해 事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物品·書類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에 대한 情報提供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의 不滿 및 損害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제출된 物品 또는 書類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5·12·29]

第52條의2 (聽聞) 中央行政機關의 統은 第17條의3 내지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등의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第52條의3 내지 第52條의5 削除 <99·2·5>

第52條의6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등) ①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業務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資料 및 情報의 使用目的·使用節次등을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려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團體가 資料 및 情報을 요청하는 때에는 第52條의7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의 協議·調整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을 요청할 수 있는 消費者團體의 要件과 資料 및 情報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消費者團體에 제공된 資料 및 情報은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린 使用目的·使

用節次의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9·2·5]

第52條의7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 ①第52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團體의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1. 消費者團體가 요청하는 資料 및 情報의 범위·使用目的·使用節次에 관한 사항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協議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5]

第8章 罰 則

第5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5>

1. 第17條의3第1項 또는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52條의6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5>

1.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및 關係物品 또는 書類등을 허위로 제출한 者
2. 削除 <99·2·5>
3.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12·29>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

(추 107)

月 이내에 7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 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職된 것으로 본다.

⑥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부담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는 이 법에 의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 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95·12·29>

이 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 則 <99·2·5>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전문개정 1996·3·30 대통령령제14962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3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다른관세법시행령
등의개정령)
1998·4·1 대통령령제1575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
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업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①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소비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소비자보호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사업의 사업명·사업주체·사업내용·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관 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법 제 5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 3 조제 3 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5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 6 조 (추진실적의 부의)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3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시·도지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①법 제 5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1. 법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협동조합등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이용시설·공동구매 및 판매사업등
3.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운영등)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추 72)

-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 3. 의르법 제3조제3항 및 등즈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
- 4.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 5. 기타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재정경제원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위해정보보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운영등 효율적인 위해정보관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제9조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달기구의 설치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피해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불등 보상방법 및 기타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 2.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3.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

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유대가 간편하고 일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고시)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단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제13조 (시험·검사등의 요청)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구와 설비(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4조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제조업
2. 전기·가스업
3. 트·소매업
4. 운수·통신업
5. 금융·보험업
6. 기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제15조 (위해물품 및 용역의 시정명령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등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등일 또는 유사한 위해를 계속·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④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제 4호의 시정기간내에 당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에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 4 장 소비자단체

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물품의 품질·성능·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 또는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검사를 말한다.

1. 화학시험
2. 전기시험
3. 열 및 은도시험
4. 비파괴시험
5. 음향 및 진동시험
6. 광학 및 광도시험
7. 의학시험
8. 생물학적 시험

② 법 제18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보호원
3. 계량및추정에관한법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③ 소비자단체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0일전에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 1 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채용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2. 3개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 제 6 호 및 제 7 호와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2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은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
2. 법 제23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사항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3조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4조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0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27조 (지부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연월일
4. 설치이유
5. 지부의 조직
6. 기타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보호원의 피해구제처리 제외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구제는 다음 각호의 피해구제로 한다. <개정 98·4·1>

1. 변호사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두상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3. 보험업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4. 증권거래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5. 의료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실사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②보호원은 제1항 각호의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피해구제기관에 넘겨야 하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보호원은 해당 피해구제기관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시험·검사의 의뢰)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험·검사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보호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법 제3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구성) 원장은 법 제3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를 각각 2인이상 균등하게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정위원회 간사) ①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기타사무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원장이 보호원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3조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요청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피해구제의 청구등) ①법 제39조제 1 항 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등으로 할 수 있다.

②보호원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

(추 72)

해 피해구제의 청구에 관련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법 제43조의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장은 법 제18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의 대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법 제34조제 3 항 및 법 제35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와 운영 및 조정절차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등) ① 법 제4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4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원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결산보고) 법 제49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원은 당해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4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법 제28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 7 장 조사등의 절차

第19編 財政·經濟一般 第9章 物價·公正去來·外資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43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97·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비자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된 것으로 보는 단체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17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1>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1997. 1. 13]
조례 제272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르써 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반입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

동할 수 있는 권리

제 4 조 (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민주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 2 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 6 조 (위해방지)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 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

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 조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소비자보호교육 등)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기구를 둔다.

제 3 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

제 11 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소비자보호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도내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5. 설립년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비자단체의 소비자협동조합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단체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군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로부터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군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급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협동조합등의 경우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15조 (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도지사는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자의 의무

제16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규
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7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
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
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
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
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제21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제9조제1항에 의
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
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 운영) ①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구제발
생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23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쪽한도·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도·시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도지사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도·시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비자피해조정)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

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도지사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30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도지사가 제24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30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 (권고 및 공표) ①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제30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 시험·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 7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3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도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경제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사항 자문
5. 도 관여요금 및 사용자·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시·군 관여 공공요금중 상·하수도요금의 조정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시·군별 인상율이 10%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결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양주군소비자보호조례 제정

□ 제 정 이 유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주군과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 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수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급물가모니터를 두고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시책 등을 추진토록 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 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상담실 및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토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마. 사업자는 위해물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해물품 발생시 즉시 이를 공표 및 회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6조)
- 바. 사업자는 상품에 유효기간, 유해성분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을 할 수 없음(안 제17조, 제21조)
- 사. 소비자보호 및 군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2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 소비자보호법 제5조
-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5조
-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 당 없 음

□ 예산수반사항 :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6,150천원

□ 사전예고결과 : 1999. 7. 12 ~ 8. 1(20일간) 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없 음